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14호
------	--------

제출연월일:2000. 3. 3.
제 출 자: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9조)
- 나.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 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안 제21조, 안 제22조의2)
- 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안 제39조)
- 라.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3, 안 제40조의4, 안 제40조의5)
- 마.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개정(안 제46조)
- 바.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개정(안 제60조)
- 사.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 신설(안 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세정13415-11275('99.12.16) 「지방세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2000 - 6 호(결과,특기할 사항없음)

4. 본문 : 붙임참조.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7호를 제8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9조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중 “위원회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의 본문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신고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년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중전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10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절의2 “주행세”를 신설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및 이와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중 과세표준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세표준)	(세율)
<u>400만원이하</u>	<u>과세표준액의 100분의3</u>
<u>400만원초과</u>	<u>12만원+400만원초과</u>
<u>1천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10</u>
<u>1천만원초과</u>	<u>72만원+1천만원초과</u>
<u>4천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20</u>
<u>4천만원초과</u>	<u>672만원+4천만원초과</u>
<u>8천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30</u>
<u>8천만원초과</u>	<u>1천872만원+8천만원초과</u> <u>금액의 100분의 40</u>

제60조 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세목) ①(생략)</p> <p>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p>③(생략)</p>	<p>제3조(세목) ①(현행과 같음)</p> <p>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현행과 같음) 4. <u>주행세</u> 5.~8.(현행 4.~7.호와 같음) <p>③(현행과 같음)</p>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p>

현행	개정안
<p>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⑤(생략)</p> <p>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신고납부) ①(생략)</p> <p>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u>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u></p> <p>1~2.(생략)</p> <p>3. <u>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결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u></p> <p>4.(생략)</p> <p>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p>	<p>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⑤(현행과 같음)</p> <p>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p> <p>제21조(신고납부) ①(현행과 같음)</p> <p>②----- ----- ----- -----<u>날까지 제22조의2제1항</u> <u>의 규정에 의하여</u>-----.</p> <p>1~2.(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현행과 같음)</p> <p>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 ----- -----</p>

현 행	개 정 안
<p>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신 설></p> <p><신 설></p>	<p>-----</p> <p>-----</p> <p>-----</p> <p>-----</p> <p>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지한다.</p> <p>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p> <p>①~②(생략)</p> <p><신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신설></p>	<p>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p>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 -----2,000원 미만 -----</p> <p>제3절의2 주행세</p> <p>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p> <p>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p> <p>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급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p>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 법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p> <p>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p> <p>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p> <p>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6조(세율) ----- ----- ----- -----</p>

현행	개정안
<p>(과세표준) (세율)</p> <p><u>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u></p> <p><u>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초과</u></p> <p><u>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u></p> <p><u>1,000만원초과 108만원+1,000만원초과</u></p> <p><u>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u></p> <p><u>2,500만원초과 513만원+2,500만원초과</u></p> <p><u>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u></p> <p><u>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초과</u></p> <p style="text-align: center;"><u>금액의 100분의 50</u></p> <p>제60조(신고납부 등) ①~②(생략)</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 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p> <p>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p> <p>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p> <p>여야 한다.<후단신설></p> <p>④(생략)</p>	<p>(과세표준) (세율)</p> <p><u>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u></p> <p><u>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초과</u></p> <p><u>1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u></p> <p><u>1천만원초과 72만원+1천만원초과</u></p> <p><u>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u></p> <p><u>4천만원초과 672만원+4천만원초과</u></p> <p><u>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u></p> <p><u>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u></p> <p style="text-align: center;"><u>금액의 100분의 40</u></p> <p>제60조(신고납부등) ①~②(현행과같음)</p> <p>③-----</p> <p>-----</p> <p>-----</p> <p>-----</p> <p>----- 이 경우</p> <p><u>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u></p> <p><u>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u></p> <p><u>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u></p> <p><u>제할 수 있다.</u></p> <p>④(현행과 같음)</p>